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2월 18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한 ‘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회원의 의정비 지급기준’에 맞춰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“3,815,000원”에서 “3,864,590원”으로 변경함([별표 2]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, 제34조
- 나. 예산조치 : 월정수당 인상액 2019년 예산 반영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지 급 액
월정수당	3,864,590 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[별표 2]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	[별표 2]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,815,000 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지 급 액	월정수당	<u>3,815,000 원</u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,864,590 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지 급 액	월정수당	<u>3,864,590 원</u>
구 분	지 급 액								
월정수당	<u>3,815,000 원</u>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
월정수당	<u>3,864,590 원</u>								

○ 비용추계 세부내역

1)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지급 ≙ 327,327천원

- 총비용 = 65,465천원(연간비용) × 5(년) = 327,327천원

· 월정수당 증가액 월49,595원 × 12개월 × 110명(의원수) = 65,465천원

<월정수당지급기준표 변경 내용>

구 분	지 급 액		
	개정 전	개정 후	증감
월정수당	3,815,000원	3,864,595원	49,595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강평선

☎ 02-2180-7932

e-mail : kangdan@seoul.go.kr